
5.

6. . 가

6 (.) . 1 .
「 」 2 「 」 3 가

가

1. 가

2.

3. 5 가

7 ()

. < [2010.3.19](#) >

1.

2.

3. 가 2

4. (浴水) 「 」

5. .

6. 가

7. 「 」 82 3 (" ")가

8. . 가

8 (.) . . (.)
) (半期) 1 6

7

1 . 1 .

. 가

가 1 . .< [2010.3.19](#) >

1 . 5 .

9 () 「 」 82 3 .
2 .

10 () 「 」 82 3

· · 6 ·

(受理)

7

11 () 「 」 " " · " , " " " " , 「 」 25

10

. < [2010.3.19](#) >

1. 5

2. 6

3. · · 8

4. 25

5. 26 (1 2)

6. 「 」 28 73

< 18 ,2010. 9. 1 >

[별표 1]

안마시술소·안마원의 시설 기준(제6조 관련)

1. 안마시술소

가. 연면적은 83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고, 안마실의 외부에 욕실과 발한실(發汗室)을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경우 그 규모는 90제곱미터(욕실과 발한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욕실과 발한실을 부대시설로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마실의 내부에 욕조가 없는 샤워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안마실이 5개 이상 설치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안마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 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종업원의 수는 10명 이하로 하고, 안마사를 안내하는 종업원은 안마사 수의 2분의 1로 한다.

2. 안마원

가. 연면적은 115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고, 욕실과 발한실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부속 기관으로 안마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욕실과 발한실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나. 안마원의 내부에는 시술을 받는 남녀를 구분하기 위한 간이 칸막이 외에 따로 안마실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 외부에는 안마원의 명칭 외에 “안마, 마사지, 지압, 안마 보조 자극요법”을 표기할 수 있다.

다. 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종업원의 수는 2명 이하로 한다.

[별표 2]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9조 관련)

I. 일반 기준

1. 의료 관계 법령을 위반한 안마사·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다른 법령에 따로 처분 기준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
2. 위반 사항이 두 가지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 기준에 따른다. 다만, 처분 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 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분할 수 있되, 각 처분 기준을 합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에 소속된 안마사가 호텔 등에 출장하여 시술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II. 위반사항별 행정처분의 기준 제10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II. 위반사항별 행정처분의 기준

위반 사항	관계 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1. 개설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3조제3항	폐쇄			
2. 폐업·휴업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0조 및 법 제64조제1항제5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이하	영업정지 2~3개월	폐쇄
3.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3조제5항 및 법 제64조제1항제5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이하	영업정지 2~3개월	폐쇄
4. 제6조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6조, 법 제63조 및 법 제64조제1항제6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1~3개월	영업정지 4~6개월	폐쇄
5. 제7조제1호·제2호·제4호·제6호·제7호 및 제8호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6조, 법 제63조 및 법 제64조제1항제6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이하	영업정지 2~3개월	폐쇄
6. 제7조제5호를 위반한 경우					
- 퇴폐·음란행위를 한 경우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6조, 법 제63조 및 법 제64조제1항제6호	경고	영업정지 2개월	폐쇄	
- 도박행위를 한 경우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6조, 법 제63조 및 법 제64조제1항제6호	경고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6개월	폐쇄

7.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자가 안마시술행위를 하거나 그에 게 안마 시술행위를 하게 한 경우	법 제27조, 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	영업정지 1개월 이하	영 업 정 지 1~2개월	영 업 정 지 2~3개월	폐쇄
8. 관계 공무원의 지도·점검을 기피·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9조 및 법 제64조제1항제3호	영업정지 1개월 이하	영 업 정 지 1~2개월	영 업 정 지 2~3개월	폐쇄
9. 영업정지 기간에 안마시술행위를 한 경우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9조 및 법 제63조	폐쇄			
10. 안마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5조제1항제5호	자격취소			
11.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4조제1항제6호	영 업 정 지 1~3개월	영 업 정 지 4~6개월	영 업 정 지 7~12개월	폐쇄
12. 안마사 자격정지 기간에 안마시술행위를 한 경우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5조제1항제2호	자격취소			
13.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안마시술행위를 한 경우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6조제1항제2호	자 격 정 지 3~4개월	자 격 정 지 5~6개월	자 격 정 지 12개월	

비고

1. 시정명령에는 반드시 시정할 기간을 밝혀야 하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 사항을 거듭 위반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내용을 밝혀야 한다.
2. 제2차 제3차 제4차 위반에 대한 처분은 직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 사항을 거듭 위반한 경우에만 한다.